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28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양부남 · 이해식 · 윤준병
김한규 · 민병덕 · 채현일
박은정 · 이강일 · 정준호
이주희 · 조계원 · 박선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확인과는 다르게 실태조사원의 채용 및 실태조사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및 제재의 근거 등이 모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8조 신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대상·시기·방법,”을 “대상·시기·방법,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제108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내용·종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u><신설></u>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u> <u>⑤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⑥ -----대상·시기·방법,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 ----- ----.</u> <u>제4장 벌칙</u> <u>제108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u>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32조의2제5항을 위
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
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